

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1. 사육관리

- 가. 곤충의 종류, 크기, 특성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갖추고 그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·제공하여야 한다.
- 나. 사육·관리하는 곤충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리,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2. 병충·해충 관리

- 가. 병충·해충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곤충의 특성에 따른 진단, 소독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나. 곤충에 질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